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107904 저작물 등록말소 등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박선우, 김민승, 김태인, 김제윤

피 고 1. B

2. C

3. 사단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이소희, 안지윤

변 론 종 결 2026. 4. 15.

판 결 선 고 2026. 6. 1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그 중 100,000원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나머지 200,000원에 대하여 2025. 11. 6.부터 각 2026. 6.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사단법인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단법인 D 사이에 각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피고 사단법인 D(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관계권리자로 등재된 피고 B의 음악저작물(작품명: E, 작품코드: F)의 피고 협회의 권리저작물 등재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 C은 공동하여 1,350,586원, 피고 협회는 206,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되어 음악저작물의 관리 및 사용승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2) 망 G(1987. 8.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음악저작물인 "E(피고 협회 작품코드 H, 이하 '이 사건 원곡'이라 한다)의 작곡자이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원곡을 편곡하여 가수 'I'가 1995. 12. 1. 발매한 1집 앨범(이하 '이 사건 앨범'이라 한다)에 수록하여 공표한 사람이다(이하 위 편곡된 곡을 '이 사건 편곡'이라 한다). 피고 C은 가수 'I'의 구성원으로, 이 사건 편곡을 실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저작권 신탁계약

1) 피고 협회는 1965. 9. 7. 망인과, 망인이 이 사건 원곡의 작곡자로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할 음악저작권을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피고 협회에 신탁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 협회로부터 피고 협회가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등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으로부터 이를 신탁받아 관리하여 왔다.

2) 망인은 1987. 8. 31.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인 J과 망인의 자녀¹⁾ 중 원고 본인, K, L를 대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승계하였다.

3) 피고 협회는 1989. 12. 11. M, N이 망인의 친자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저작물에 관한 사용료를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69%, M(M 본인, N을 대표하여 수령하였다)에게 31%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편곡의 음악저작물 등록 등

1) 피고 B가 1996. 3. 27. 피고 협회에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음악저작물신고를 하였다. 피고 협회는 그 무렵 피고 B와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편곡을 피고 협회의 관리저작물로 등록하면서 망인을 작곡자로, 피고 B를 편곡자로 각 등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 등록'이라 한다).

2) 피고 협회가 내부규정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이하 '분배규정'이라 한

1) 망인은 J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K, L를 두었고, O와의 사이에 자녀로 M, N을 두었다.



다)」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사용료를 분배하였다. 조회할 수 있는 가장 과거의 시점부터 2025년 4월까지 피고 협회가 이 사건 편곡의 권리자들(작사자인 P에게 분배된 저작물 사용료는 제외한다)에게 분배한 사용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작자		분배율	권리자	분배금액(원)	합계(원)
작곡자	G	5/12	M	168,541	599,488
			원고	430,947	
편곡자	피고 B	2/12	피고 B	75,805	75,805

라. 관련 규정 등

피고 협회의 저작권 신탁계약약관(망인은 1973. 3. 1. 위 약관에 서명하였고, 현행 약관은 1973. 3. 7. 제정되어 2017. 4. 13.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신탁계약약관'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구별하여 기재한다)과 피고 협회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C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원고와 피고 B, 피고 협회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 29, 45, 46, 56, 57호증, 을다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협회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는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원곡에 관한 소제기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인 피고 협회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가지고, 이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항). 또한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를 보유하는데(위 법 제22조, 제10조),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위 법 제45조 제2항 본문).

2)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원곡을 무단으로 편곡하여 음악저작물로 등록함으로써 망인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또는 원고가 승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 등록의 말소를, 피고 B, C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구하고, 피고 협회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 사건 편곡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3) 피고 협회의 신탁계약약관(갑 제26호증,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위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제3조 제1항),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제13조). 그러나 위 약관은 피고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저작권의 범위를 '공연권,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로 정할 뿐(제6조), 위탁자가



피고 협회에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위탁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관 제13조에 따라 위탁자의 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신탁저작권은 위 약관 제6조에 정한 저작권으로서 해당 저작물의 직접적인 사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나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이 사건 약관 제13조에 반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 협회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원곡을 무단으로 편곡하고 이 사건 편곡을 피고 협회에 저작물로 등록하였다. 이는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사용료 중 편곡자에 관한 부분을 분배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127조에 따라 이 사건 편곡에 관하여 피고 협회에 등재된 저작물에 대한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②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편곡 발매 당시의 관행에 따른 '곡비' 상당액으로 위 편곡 매출액의 9%에 해당하는 1,350,5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1995년경 이 사건 앨범 제작사인 Q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원곡을 편곡하였고, 당시 Q가 원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저작물 이용과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 등의 저작인격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



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나. 피고 B의 저작권 침해 여부

1) 저작인격권의 침해 여부

가)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 편곡은 피고 B가 이 사건 원곡을 편곡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창작물이므로 이 사건 원곡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그런데 을다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가 피고 협회에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음악저작물신고를 하면서 작곡자를 망인으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앨범의 공표자료에 이 사건 편곡의 작곡자가 망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B가 이 사건 편곡에 관하여 망인을 작곡자로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 유지권)를 가진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편곡 등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작성한 독자적인 저작물이므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변경은 당연히 수반된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원저작물의 내용·형식이나 제호를 변경하여 원저작물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와 별도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편곡을 통해 이 사건 원곡의 내용이나 형식을 본질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원곡의 동일성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2차적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된다. 또한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등 참조).

나) 을가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서울광진경찰서가 2021. 10. 22. 이 사건 편곡에 관한 피고 B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②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앨범 제작에 참여한 Q 직원 R이 '이 사건 앨범 제작 당시 O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에서 R이 'Q에서 이 사건 원곡의 원저작자 측과 사용승낙이나 권리확인을 이미 한 상태에서 편곡이 진행되었다. 피고 B는 단순히 외주 편곡자로 참여하여 일회성의 편곡비만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가 Q를 통해 이 사건 원곡



의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편곡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증거들, 을다 제3,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7. 8. 31. 사망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망인의 이 사건 원곡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한 사실(이 사건 신탁계약에 정한 신탁의 범위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앞서 2.항에서 보았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망인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바탕으로 제3자에게 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③ 이 사건 앨범이 발매된 1995년 12월에는 이미 원고 등이 망인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승계한 상태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R의 진술에 따르면 Q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 O 측으로부터만 이 사건 원곡에 관한 2차적저작물 작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원곡의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적법한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편곡을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원곡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B에 대한 등록말소 청구

1) 저작권 등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



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저작물 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 B는 피고 협회와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저작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저작물에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협회는 위 편곡에 관한 신탁재산권을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할 의무를 부담한다(신탁계약약관 제3조 제1항, 제9조).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은 위 규정의 목적을 저작권신탁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음악저작물의 신고·등록 및 저작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제1조). 그렇다면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등록은 저작자와 체결한 개별적인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권 관리, 저작물 사용료 분배 등의 신탁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실상의 조치로 보이고, 위와 같은 등록만으로 곧바로 원고 등 제3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므로(제5조 제1항), 원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편곡에 관하여 원고 측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하나, 피고 B는 이 사건 편곡의 편곡자로서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피고 협회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원곡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음(위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정한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앞서 보았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가 곧바로 피고 B에게 피고 협회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저작물 등록의 말소를 구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 협회의 분배규정은 편곡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편곡자는 해당 편곡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분배대상이 되고(제3조 제3항), 이 경우 저작물 사용료는 작곡자 5/12, 작사자 5/12, 편곡자 2/12의 비율로 분배한다(제14조)고 정한다. 피고 협회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저작물 사용료를 관계권리자인 원고, 피고 B 등에게 분배하여 왔다. 피고 B가 이 사건 편곡에 관하여 분배받은 저작물 사용료는 이 사건 편곡의 편곡자로서 분배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저작물 등록이나 피고 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분배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4항).

나)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원곡에 관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승계하였고, 피고 B가 이 사건 편곡의 작성에 관하여 원고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



다. 이 사건 원곡의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앨범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1995년 12월 발매되어 그 무렵에는 이미 원고 등이 망인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승계하였는데, Q는 그 일부인 O 측으로부터만 이 사건 원곡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가 Q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편곡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원곡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고, 피고 B가 Q 측에 이 사건 원곡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거나 Q가 피고 B에게 위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원곡의 저작권재산권자인 원고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1999년 신보음반 인세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음악저작물의 이용자



가 저작자에게 정액의 '곡비'를 주고 이용허락을 받는 관행이 있었고, 인세제를 도입하면서 위 관행을 명문화하여 매출액의 9%를 음반 판매에 따른 저작물사용료로 정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 협회가 이 사건 편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에게 지급한 저작물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액 14,164,233원²⁾의 9%인 1,350,586원이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협회의 징수규정(갑 제44호증)은 피고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공연, 방송, 전송, 웹캐스팅, 복제 및 배포, 대여 및 기타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각 이용방법에 따른 사용료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제28조에서 상업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음악사용료율을 출고가의 9%로 정하고, 신보음반 인세제 도입 이전의 '곡비'도 위와 같이 해당 음원을 사용하여 음반을 발매할 때의 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편곡에 관하여 관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저작물 사용료는 위 저작물이 상업용 음반의 판매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위 저작물 사용료에 일괄적으로 9%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위 '곡비'나 사용료율은 해당 저작물을 직접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배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위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이 사건처럼 해당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1,350,586원이 제3자가 이 사건 원곡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2) 분배규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편곡의 관계권리자(원고, M, 작사자, 피고 B)에게 분배된 저작물 사용료 합계 1,274,781원에 대하여 피고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상업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음악사용료율(출고가의 9%)를 적용하여 역산한 금액이다.



작성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대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저작권법 제125조의 다른 조항 적용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피고 B가 피고 협회로부터 분배받은 저작물사용료는 독립적인 저작물인 편곡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Q 측은 이 사건 원곡의 저작권을 승계한 사람이 O 측이라고 이해하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Q 측에게 적극적으로 망인이나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 B는 이 사건 앨범 제작 과정에서 외주 편곡자로 참여하여 일회성의 편곡비만 지급받았을 뿐 위 앨범 판매에 관한 수익이 직접적으로 피고 B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원곡에 관한 망인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 경위나 방법, 그 내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B가 원고의 저



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원고가 얻은 재산상 손해액은 3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피고 B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20.부터, 나머지 200,000원에 대하여 2025.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1. 6.부터 각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편곡을 실연하는 등 피고 B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편곡 발매 당시의 관행에 따른 '곡비' 상당액인 1,350,5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요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2023. 6. 20.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



C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의 취지 참조), 법원은 자백간주에 구속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였다거나 피고 C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곡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1) 피고 B가 2차적저작물인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받기 위해서는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원곡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심사하고, 해당 2차적저작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등재하고 그들에게만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협회는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원곡을 편곡한 피고 B의 신고만으로 이 사건 편곡을 별도의 저작물로 등록하였고, 위 편곡에 관한 저작물 사용료를 피고 B와 망인의 제적등본상 상속인이 아닌 M에게도 분배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가 위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위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6,443원(= 피고 B에게 분배된 저작물 사용료 75,805원 중 작사자 지분 1/2



을 제외한 37,902원 + M에게 분배된 저작물 사용료 168,5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협회는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피고 B, M에게 위 편곡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B, M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저작물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 M이 분배받은 저작물 사용료 중 원고의 몫인 206,44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협회는 위 1)항과 같이 피고 B의 신고만으로 이 사건 편곡을 관리저작물로 등록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피고 B, M에게 위 편곡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함으로써 피고 B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다. 피고 협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 M이 분배받은 저작물 사용료 중 원고의 몫인 206,4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8, 4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협회의 등록규정에서 음악저작물을 편곡 등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음악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원저작자(작사자, 작곡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현재 피고 협회에 2차적 음악저작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써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피고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개작 동의서(갑 제18호증)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 B가 1996. 3. 27. 이 사건 편곡에 관하여 음악저작물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원곡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원곡에 관한 2차적저작물의 등록에 관하여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인 심사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 B, M에게 지급된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협회의 주된 의무는 등록규정과 징수규정, 분배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원곡이 공연, 방송 등의 신탁계약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 발생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는 것이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위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 관리범위를 넘어 이 사건 원곡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의 신고가 있었을 때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여부를 심사하는 등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나) 편곡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록규정 제4조 제3항은 위 등록규정이 2004년 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원저작자의 개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2차적저작물 등록 양식(갑 제18호증)도 위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신설되었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편곡을 2차적저작물로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 협회에 원저작자의 개작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는 실무상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현행 등록규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등록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확인 보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위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제5조 제1항). 따라서 현행 등록규정 제4조 제3항은 2차적저작물을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원저작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판단되고,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협회가 곧바로 위 등록규정 제정 이전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수탁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라) 한편 신탁계약약관 제19조 제1항은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고 협회는 1989. 12. 11. M, N이 망인의 친자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저작물에 관한 사용료를 그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69%, M에게 31%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1989. 11. 30. 피고 협회에 '저작권협회 방침에 따라 M에게 협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작품료를 분배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다 제3호증 6면)를 제출하였다. 위 M, N이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 협회의 조치에 관련 규정 등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마) 피고 협회의 분배규정은 사용된 관리저작물의 관계권리자는 해당 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되고(제3조 제1항), 관계권리자는 편곡신고 등 저작물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확정한다(제5조)고 정한다. 피고 협회는 위 분배규정에 따라 이 사건 편곡의 편곡자인 피고 B와 작곡자의 상속인인 M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하였고, 이러한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가 피고 협회의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위 저작물 사용료가 원고에게 대신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계약상 근거가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 협회를 상대로 '피고 협회가 이 사건 편곡에 관하여 피고 B, M에게 분배한 저작물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피고 B, M에게 위 저작물 사용료를 이미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원고도 위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협회가 이 사건 편곡에 관하여 위 저작물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협회에 위 저작물 사용료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앞서 나.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원곡에 관한 2차적저작물의 등록에 관하여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인 심사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수탁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협회는 등록규정에 따라 이 사건 편곡의 관계권리자로 신



고된 원고, M, 피고 B 등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하여 왔고, 이러한 피고 협회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는 점, ③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신탁계약약관 제18조 등에 따라 이 사건 편곡에 관한 저작물 사용료 지급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피고 협회에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협회가 피고 B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재남

판사 김창수

판사 김시정



별지

관련 규정

▣ 피고 협회 신탁계약약관

○ 1973. 3. 7. 제정된 것

제2조(신탁재산) 갑은 갑이 소유하는 모든 음악적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신탁 재산으로 하여 을에게 관리를 위탁하며 을은 저작권의 관리에 의해 얻은 저작물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저작권의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제1차적 사용은 갑의 의사를 따른다.

1. 연주 및 상연 또는 가창
2. 방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3. 영화화 및 상연
4. 출판
5. 음반, 녹음, 녹화 필름 테이프 등의 이차적사용 각종음반테이프의 복제사용
6. 기타 이용방법

○ 1995. 3. 18. 개정된 것

제5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모든 저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되며, 또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보증한다.
- ② 수탁자는 전항의 확인 보증한 저작물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위탁자에게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7. 4. 13. 개정된 것

제3조(저작재산권의 신탁)

-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



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 ④ 제1항에 의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6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상의 관리범위

제9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13조(소권)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민·형사의 소 제기를 한 경우

제19조(신탁계약의 승계)

- ①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본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1988. 2. 23. 제정, 2019. 9. 20.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저작물자료: 작품신고, 편곡신고, 역사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저작물의 관계권리자, 분배율



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분배대상자)

- ① 사용된 관리저작물의 관계권리자는 해당 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된다.
- ③ 편곡자 또는 역사자는 해당 편곡 또는 역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분배대상이 된다.

제5조(관계권리자의 확정방법 등) 관계권리자는 저작물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확정한다.

제14조(분배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관계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 4. 작곡자 5/12, 작사자 5/12, 편곡자 2/12

▣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2004. 3. 24. 제정, 2024. 1. 29. 개정된 것)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

- ① 위탁자는 협회에서 정한 저작물신고서에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본인의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써 음반, 도서, 음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증빙자료에서 본인의 저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단, 신보음반 출시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③ 음악저작물을 역사, 편곡 등의 방법으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음악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원 저작권자(작사자, 작곡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 등록의 확인 보증)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등록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확인 보증하여야 하며, 저작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신탁계약약관 제18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유보)에 의거하여 위탁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6조(저작물 등록 확인 및 이의 신청)

- ① 위탁자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확인 보증하여 신고한 저작물에 대해 수탁자는 등록 후 그 사실 관계를 위탁자 및 제3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전항에 의거 공고한 내용에 대해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제8조(저작물 등록 접수 반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 등록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4. 제4조에서 정한 저작물 등록서류와 증빙서류가 첨부 되지 않았을 경우

■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1988. 2. 23. 제정, 2025. 5. 7. 개정된 것)

제28조(음반)

① 상업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출고가 × 9%(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비고1) 출고가란 음반 제작 후, 유통사에서 도·소매점으로 출고되는 가격을 말하며, 출고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의 60/100을 출고가로 간주한다. *소비자가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대규모 점포 중 각기 다른 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음반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